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

제 1 조(설치목적)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중견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충청북도 직속기관으로 도립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 2 조(명칭및위치) 대학의 명칭은 "옥천전문대학"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내에 둔다.

제3조(대학운영위원회) 대학의 설치목적의 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재정운영) ① 대학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거 대학운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수 있다.
② 대학운영비는 학생등록금, 정부지원금과 도재정등으로 충당 한다.

제5조(학과) 대학에 설치되는 학과 및 학생정원과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장)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둔다.

②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제7조(교원) ① 대학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조교 등의 교원을 둔다.

②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은 학생을 교수·연구·지도하며, 조교는 전임강사이상 교원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좌한다.

③ 학장은 전임강사의 임용에 있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학과장) ①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둔다.

② 학과장은 전임강사이상의 교원으로 겸임 보직한다.

③ 학과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에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장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겸임보직하며, 학장의 명을 받아 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직제) 대학의 직제와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감독 및 승인) 학장은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법, 교육공무원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설치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97. 5. 28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변동 가능한 사항을 명문화할 경우 사유발생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어 행정의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이며
- 임용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데 자칫 의회에서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는 관련 조문을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새로이 배열하고
- 대학의 관리, 운영에 있어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여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함임

2. 수정 주요골자

- 안제1조 중 도립전문대학을 둔다를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한다"로 함
- 안제2조 중 금구리 40번지외 6필지에 둔다를 "금구리내에 둔다"로 함
- 안제3조 대학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제10조 4호를 안제7조 3항으로 신설하여 배열함
- 안제10조 중 중요한 안건의 결정에 앞서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함

충청북도립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안)

충청북도립 옥천전문대학 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설치목적) 중 "도립전문대학을 둔다"를 "도립전문대학을 설치한다"로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중 "금구리 40번지와 6필지에 둔다"를 금구리내에 둔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대학운영위원회) 대학의 설치목적의 달성과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두고 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5조, 6조를 각각 제5조, 6조, 7조로 하며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장은 전임강사의 임용에 있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8조, 9조, 10조를 각각 제8조, 9조, 10조, 11조로 하며

제11조(감독및승인) 다음에 학장은을 삽입하고 동조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다음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를 삽입하며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 12조를 각각 제12조, 13조로 한다.